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의 번 호	57
-------------	----

제출년월일 : 1999년 1월 12 일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97. 9. 11일자로 대통령령 제15480호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음식점·숙박시설 설치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를 일부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3조)
- 나.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등의 설치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주변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 군수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제5조)
- 다. 숙박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토지의형질변경 또는 건축허가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함.(안제6조)
- 라. 숙박업등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산림의 형질변경 등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건축허가와 함께 복합민원으로 처리함.(안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도준칙(지계58214-1405, '98. 7. 23) - 불임
- 라.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 불임
- 마.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평창군조례제 호

평창군준농림지역내 음식점 · 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 숙박업 · 관광숙박업 (이하 "숙박업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설치허용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등의 설치를 군수가 허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숙박업등의 설치허용지역 등) ①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및 시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하천 · 준용하천으로부터 양안 40m이상의 지역
 - 가. 하천개수완료구간 : 제외지 비탈 상단법선
 - 나. 미개수구간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제외지 비탈 상단법선
2. 환경영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3.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같은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단, 수도법 제3조제15호 규정에 의한 상수원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4Km이내 집수구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에 한함
4. 가.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철도변지역의 양측 경계선으로부터 50m, 국도·지방도·군도 경계선으로부터 30m이상 지역.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에 대해 서는 국도·지방도·군도 경계선으로부터 10m이상 지역
나.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하천·준용하천과 숙박업등의 설치 예정지 중간에 가목 규정에 의한 도로가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5. 건축법 제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군수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평창군 건축위원회심의를 받아야 한다.
6. 준보전임지중 임상과 경관이 불량한 산림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
7. 영농을 목적으로 이용한 지역으로서 보전가치가 적거나 주민소득을 증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8. 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상류로 200m이상 지역
9.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보전구역이외의 지역
10.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제한 구역이외의 지역
11. 국가·지방지정 문화재 및 명승지·사적지 주변으로부터 100m이상인 지역

12.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
13.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부분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

②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업등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1. 군수 또는 농·수·축·임협장이 설치 및 지정하는 농수축산물 직판장내 음식점
2. 도로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허카받아 설치하는 도로변 휴게소내 음식점

제4조(시설물 판단 적용기준) 제3조제1항의 허용지역 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촉여부를 판단 적용하고 기준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담당부서에서 판단 적용한다. 또한 기준 시설물에서 적용하는 거리는 숙박업소등의 건축외벽선까지 거리로 한다.

제5조(숙박업등의 설치제한 특례)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주변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관계)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토지의형질변경 또는 건축허가는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숙박업등의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의 통합처리) 숙박업등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산림의 형질변경 등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가(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등은 건축허가와 함께 복합민원으로 처리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등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생략

4. 준농립지역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장·건축물·공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등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취지와 평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준농립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 나.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 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② 생략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특별종합대책수립)

-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의 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수도법 제5조(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 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특별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2.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수도법 제3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원"이라 함은 음용·공업용등에 제공되는 자연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를 제외한다.
2. "상수원"이라 함은 음용·공업용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등을 말한다.

3~14. 생략

15. "수원시설"이라 함은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급수장치 기타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①~③ 생략

4.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당해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미관·주변환경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8조(건축허가)

①~⑤ 생략

6.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그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3. 생략

□ 도로법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

①~③ 생략

④ 접도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는 행위

3. 죽목의 채집이나 벌채하는 행위

⑤~⑥ 생략

□ 도로법시행령 제27조(접도구역의 지정등)

①~② 생략

③ 법 제50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행위의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국가사업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를 받아야 한다.

1~13. 생략

13의2. 기존휴게소의 부지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휴게소시설의 부지내·이전 또는 증축·개축·재축

④~⑤ 생략

문서번호	건설58213 ~ 3/31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98.12.16.

실무자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
		6/28/98 	12/27/98 	12/27/98
협조	정책기획담당 			기획실장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

평 창 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 조례명 :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 심의일시 : 1998. 12. 10(목) 09:00

□ 장소 : 평창군청 소회의실

□ 심의결과 : 보류 (의견제출 - 2인)

□ 제출의견 내용

- 조례(안) 제3조 제1호의 규정은 하천법에 의한 지방하천, 준용하천으로부터 50m 이상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 제4호는 도로법 규정에 의한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선으로부터 30m이상 지역(단,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에 대하여는 국도, 지방도, 군도로 부터 10m이상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 ☞ 우리군의 지형적인 여건상 대부분의 지역이 하천과 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하더라도 주민소득 향상 및 규제완화 측면에서 볼 때 별로 도움이 않된다고 판단되며,
- ☞ 특히, 하천으로부터 50m 이상으로의 거리제한은 지역여건상 대부분의 지역이 저촉될 것이므로 제한거리 단축이 요망됨.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상수도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제가 없으므로 하류에 위치한 기존 상수도 이용 주민들과 상수원 보호와 관련하여 많은 마찰이 예상되므로 간이상수도를 포함한 상수도 취수장 일정거리(4km)이내에는 각종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 요망. (서면 제출 : 도시경제과)

□ 검토의견 및 처리방안

〈 검토의견 〉

- 입법예고시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준칙·기제정된 타시군 조례와의 형평성 및 수질오염등 환경보호 측면에서 볼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 하천 — 제천시(100m), 양주군(50m), 청송군(50m), 구미시(100m), 태안군(100m)
 - 도로 — 화성군(50m), 양주군(30m), 청송군(50m), 구미시(50m),
- 본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도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시·군 조례로 허용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볼때,
- 자연환경보전 및 타시군 조례와의 형평성이 무시된 규제완화는 금지사항의 일부 허용이라는 근거법 규정 및 조례제정의 근본 취지에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 일탈의 소지 또한 간과해서는 않될 것으로 사료됨.

〈 처리방안 〉

- 따라서, 지형 및 지리적인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고 타시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통한 객관성 확보 및 관련법 근거 규정에 부응함은 물론,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추가 규정 신설 및 일부 변경코자 함.

☞ 제3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 : (일부 변경)

「단, 수도법 제3조제15호 규정에 의한 상수원취수장으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유하 거리 4km이내 집수구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에 한함.」

☞ 제3조 제1항 제4호 "나"목 : (신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하천·준용하천과 속박업등의 설치예정지 중간에 가목 규정에 의한 도로가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붙임 : 조례(안) 및 대비표 각 1부. 끝.

조례(안) 대비표

당 초	조 정
제3조(숙박업등의 설치허용지역등) ①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및 시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하천·준용하천으로부터 양안 50m이상의 지역 가. 하천개수완료구간: 제외지 비탈 상단 법선 나. 미개수구간: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제외지 비탈 상단법선 2. 생략 3.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 정화시설 또는 같은 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다만, 수도법 제3조제15호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에 한함. 4.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철도변지역의 양측 경계선으로부터 50m·국도·지방도·군도 경계선으로부터 30m이상 지역.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식품점업체에 대해서는 국도·지방도·군도 경계선으로부터 10m이상 지역.	- 좌 동 - - 좌 동 - - 좌 동 - 3. _____ --. 다. 수도법 제3조제15호 규정에 의한 상수원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4km이내 침수구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에 한함. 4. 가. (4호의 내용과 같음) 나. (신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하천·준용하천과 숙박업등의 설치에 정지 중간에 가로 규정에 의한 도로가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로 규정을 적용한다.

문서 번호	건설58213 ~ 2940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 일자	'98. 12. 2.

실무자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
	축령취가	양승우	26242	2940
협조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

평 창 군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 조례명 :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 공고기간 : 20 일간

□ 공고방법 : 읍·면별 게시판 및 군보 게재

□ 공고결과 : 용평면 - 1건, 기타 읍면 - 의견없음

□ 의견 제출자

- 용평면 개발 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 용평면 리장협의회장 김상근

□ 제출의견 내용

- 조례(안) 제3조 제1호의 규정은 하천법에 의한 지방하천, 준용하천으로부터 50m 이상 지역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지역여건 및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제한거리를 최대한 단축 요망

- 동조 제4호 규정은 도로법 규정에 의한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상 지역(단,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에 대하여는 국도, 지방도, 군도로 부터 10m 이상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지역이 협소하여 대부분이 행위제한 지역이므로 건축법에 의거하여 신고나 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관련법 검토

〈 하천법 〉

-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에 의한 지방하천·준용하천으로부터 건축물 설치등에 대한 거리제한 규정은 없음.

〈 도로법 〉

- 도로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동법규칙 제23조와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관리지침"상 접도구역폭 적용은
 - 고속국도는 서울-부산선, 중부선을 제외한 기타 고속국도는 25m,
 - 일반국도·지방도 및 군도는 5m를 접도구역으로 적용하고 있음.

□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방안

- 관련법 규정상에는 제한 규정이 없거나 조례상의 규정보다 짧은 거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 도 조례제정 지침상에도 일정거리 이상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타시군 조례와의 형평성등을 감안해 볼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 하천 — 제천시(100m), 양주군(50m), 청송군(50m), 구미시(100m), 태안군(100m)
 - 도로 — 화성군(50m), 양주군(30m), 청송군(50), 구미시(50m),
-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자연환경의 보전,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때,
- 현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다양한 의견수렴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힘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

평 창 군

우 232- 800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 전화 (0374)330-2491 / 전송 330-2595
처리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본관 1층), 담당: 김근택, 실무자 : 한상호

문서번호 건설 58214 - 2465

시행일자 1998. 10. 20.

(제 1 안)

받음 내 부 결재

참조

취급	체 송	군 수
보존	(년)	
부군수	76292	846 1
과 장	75298	
담 당	한상호	
기안	한상호	
		협 조

제목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1. 조례명 :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2. 입법예고안 : 불임 참조
3. 예고기간 : 군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4. 예고방법 : 군보게재 및 읍·면계시판 공고

불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제 2 안)

받음 받는곳 참조

제목 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추진중인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 ~~하고자~~ 21일 예고하고자 하니 읍·면계시판에 게시공고하고 그 결과를 사진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받는 곳 : 도(1 - 8)





건설 58214 -

1998. 10.

(제 3 안)

받음 기획실장

제목 조례안 입법예고문 군보게재 의뢰

입법추진중인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평 창 군 수

공 고 문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10월 23일

평 창 군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음식점·숙박시설 설치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를 일부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조례(안) 내용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1998년 11월 11일까지 평창군수(건설과)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330 - 2491)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강원도 1987.2.7

우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전화(0361)241-4076 / FAX 250-2436

지역계획과 과장 : 김정삼 계장 : 이장환 담당자 : 임찬희

문서번호 지계58214- 1405

시행일자 1998. 7.23.(년)

경유

수신 받는곳 참조

참조

선결	조수	2/16	지시
접수	일자 시간	1998. 7. 24	결재
	번호	1822	·
	처리과		공람
	담당자	·	

제 목 : “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 제정 관련 사항 통보

‘97.9.11 개정·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를 일부허용하기 위한 시·군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동 조례에 포함될 내용 등을 불임 조례(안)과 같이 통보하니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시·군 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운영토록 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조례제정 즉시 그 결과를 도에 통보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래

가. 본 조례는 준농림지역내에서의 토지이용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범위내에서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신축적으로 허용시설 및 지역을 정하도록 하고,

나. 허용지역은 행정구역 등을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개괄적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지번·지적 등의 판독이 가능한 도면을 작성하여 경계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바람.

붙임 :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1부. 끝.



강원도지

받는곳 : 대(01-18)

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 ○ 시(군)

○○시(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숙박업·관광숙박업(이하 “숙박업” 등 “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설치허용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를 시장(군수)이 허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 등) ①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및 시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과,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일정거리이상인 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3.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분뇨및죽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 정화시설 또는 같은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단, 수도법 제3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킬로미터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에 한함.

4.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및 철로변지역으로부터 제6조에 의한 ○○시(군)○○읍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판단하는 일정 거리이상인 지역으로서 특별히 경관보전을 요하지 않는 지역
 5. 건축법시행령 제8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군수)이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
 6. 준보전임지라 하더라도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 지역
 7.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 지역
 8.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으로부터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일정거리 이상인 지역
 9. 덕는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일정거리 이상인 지역
 10. 국가 및 지방지정문화재 및 명승지·사적지 주변으로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일정거리 이상인 지역
 11.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
 12. 기타 시장(군수)이 판단하여 부분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등의 구체적인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의 종류, 규모,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이 결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군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의 종류·규모,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사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숙박업 등의 설치제한 특례) 시장(군수)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허가는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의 종류·규모,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대표 ○인이내
2. 환경·건설분야 전문가 ○인이내
3. 관계공무원 ○인이내
4. 기타 시장(군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고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의 종류·규모,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공보에 게재하고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 취지 및 사유
2. 설치허용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측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 설치허용지역의 토지조사
4. 설치허용시설의 종류·규모 및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숙박업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숙박업 등의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의 통합처리) 숙박업 등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가(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등은 건축허가와 함께 복합인원으로 처리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